

화물차 및 대형트럭 밤샘 주차 강력 단속 요청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화물차 및 대형트럭 밤샘 주차 강력 단속 요청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아파트 대로변에 화물차 및 대형트럭 밤샘주차 단속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밤샘주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당지역은 횡단보도 사거리이며 유탄지역으로 주정차 상시단속구역이므로 안내 현수막 및 강력한 단속을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밤샘주차 단속가능 시간은 00:00~04:00이며, 1주일에 1회씩 화물자동차 및 대형트럭 등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시행중으로 해당지역 외에도 관내 전체지역을 단속 중임.
- 영업용차량 밤샘주차의 경우 주정차위반사항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닌 차고지 위반사항으로 단속 중이며, 계고장 부착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시행 중이나 과태료 부과 시에는 1시간 이상의 주차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해당지역만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해당지역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현수막은 없으나 밤샘주차 금지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음.

□ 사실관계

- ☆☆사거리 △△아파트 대로변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거리이며 유탄지역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 의거 상시 주·정차 금지구역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의하면 모든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의하면 모든 여객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교통행정과에서는 2022. 1. ~ 9. 현재까지 동 장소에서 단속 19건, 계도 49건 등 단속한 실적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임.

□ 관계 법령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 판단 및 결론

- 화물자동차의 불법밤샘주차는 야간 대형 사고를 유발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민원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단속시간이 00:00~04:00이고 1시간 이상 불법주차가 확인되어야만 단속할 수 있으며, 동 장소 뿐만 아니라 연수구 관내 전체를 단속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향후 동 장소에 불법 주정차 계도 현수막 설치 및 일정한 기간 단속 계도기간을 정하고 계고장 부여, 단속카메라(cctv)설치 등 지속 단속으로 불법 밤샘 주차를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의견표명 함.

‘○○○단’ 관련 조치과정 문제 제기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단’ 관련 조치과정 문제 제기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단 운영실태 점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알림’ 공문을 문자 통보 받은 바 있음.
 - 충분한 토론이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단 운영계획이 급작스럽게 변경된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이는 ○○○단 운영규정에도 없는 내용임.
 -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운영규정을 변경한 이유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해당부서의 답변이 미비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본 건 공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단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에 따라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실시한 것임.
- 본 건 공문에서는 부서의 판단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한 것 일뿐, ○○○단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단이 결정할 사항으로 내부검토 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단 훈련 참석 기준 등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과 같이 훈련 참석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예정임을 발송한 바 있음.

□ **사실관계**

- 신청인의 자녀는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는 못 하였으나 그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대회 출전 등 ○○○단 활동을 해 오고 있었음.

- ○○○단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일반학교 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9월, 국제학교 학생의 경우 7학년 2학기(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 비정기적인 훈련 참석에도 ○○○단 활동을 허용하여 형평성 문제가 야기됨.
- 해당부서에서는 ○○○단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에 따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공문으로 작성·발송하였으며, 본 건 공문 발송 후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발생하자 그 후속조치로 ‘○○○단 훈련 참석 기준 등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과 같이 훈련 참석 적용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함.

□ 관계 법령 등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판단 및 결론

- 현 ○○○단 운영규정이 있으나 그 동안 운영과정에 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적용 예정인 훈련 참석 기준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간의 운영과정에 따른 문제점, 훈련일정 미달자에 대한 퇴단조치 기준, 일반학교와 국제학교 학생의 퇴단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토의를 진행 한 후 운영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훈령 개정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표명함.